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수원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고단4494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9고단44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협박,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고은별(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오(국선)

판결선고 2019.11.7.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Galaxy J7 1대(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7. 8.경까지 피해자  $B(\phi, 53M)$ 과 교제하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졌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피고인은 2018. 9. 2.경 불상지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증 제5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기 사이트는 전문적으로 초대남 여러 명 구해서 오대일 칠대일 야동 다 나온 것 십만 원 가입해서 볼 수 있다. 그만 좀 해 정신 좀 차리고 아니면 신고해서 처리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성관계 동영상 중 여성의 음부, 여성의 나체 사진, 여성과 남성의 성행위 사진, 여성이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사진이 게시된 인터넷 C 사이트 촬영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6. 16:09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9. 7. 19:5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삼십 군데가 넘는다. 미친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6. 12:0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B의 고소장
- 1. 경찰 압수조서
-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큼 1 성폭력 범죄전력 있음
- 반성 1 피해자와 합의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9. 14:3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53세)에게 "아무말 없으니 돈 들여서 영상 확보해 놓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1. 19:2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 동의하에 촬영하였다가 헤어지면서 피해자가 삭제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피고인이 복원하여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2. 판단
-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5.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판사 김상연